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실·국·본부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본부의 설치)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민방위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 (감사실) 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 및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
2. 산하단체·협회·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3. 공직기강 확립

제4조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의 기획·조정·심사 분석
2. 예산 및 투자 심사
3. 행정 전산화 관련 업무
4. 통계의 처리와 유지 관리
5. 조례와 규칙의 심사
6. 소송사건 관련 업무와 법규의 편찬

제5조 (내무국)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식 및 행사
2. 보안에 관한 사항
3. 인사와 포상, 각종 시험 업무
4.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5. 행정구역에 관한 업무
6. 지방행정기구와 정원 관리
7. 선거와 국민 투표에 관한 사항
8. 새마을과 사회 진흥
9. 생활체육의 보급
10. 지방세·세외수입의 과징
11. 회계와 재산관리
12. 민원 업무
13. 문화와 예술의 진흥

제6조(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 향상
2. 구호와 후생에 관한 사항
3. 의무 및 약무에 관한 업무
4. 공중 및 식품위생의 관리
5. 보건에 관한 사항
6. 환경의 보호와 지도·단속

제7조(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노인과 아동의 복지 증진
2. 부녀복지의 향상
3.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4. 사회 복지 법인의 허가 및 지도 감독

제8조(농정국) 농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 정책과 농어촌 개발
2.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과 양정 업무
4. 농지의 관리와 농지의 개량
5. 농업용수의 개발과 수리 시설의 관리
6. 축산과 수산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보호와 개발

제9조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계획 수립 추진 및 동향의 분석·관리
2. 수출 진흥과 무역 및 중소기업 육성
3. 상업·광업·공업의 육성
4. 관광의 진흥
5. 특허 관련 업무
6. 에너지의 수급 관리
7.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
8. 노정 업무

제10조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상·하수도의 관리와 보급
2.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
3. 건축과 주택, 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관련 업무
5. 공원과 하천 관리
6. 방재 대책과 집행
7. 중기의 관리, 등록, 검사
8. 도로와 교량의 유지 관리
9. 건설 공사용 자재 관리
10. 지적과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11. 지방산업기지 개발 지원

제11조 (민방위국) 민방위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방위대원 관리
2.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계몽
3. 인력 동원
4.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12조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화재의 진압
2. 소방장비의 수급 및 개선
3.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

제13조 (담당관·과 등의 설치) 담당관·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충청북도의 실·국·본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